

2021. 3. 26.~4. 2.
- 8일간 -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심사결과

의안명	심사결과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주요 내용

1.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안자 : 이태신 의원 발의
- 제안이유
 - 자문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는 의결에 관한 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자문기구성격과 동떨어진 의결에 관한 조항 삭제(제8조의 2)
 - * 자문 :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행위
 - * 의결 : 합의체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결정된 결론)
 - 의정활동을 위한 의견청취 제도와 중복되는 항목 삭제(제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안자 : 오원석 의원 발의
- 제안이유
 - 심의회 회의 관련하여 조례에 맞게 심의위원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심의회 회의 관련 사항을 심의위원장으로 변경(제13조의 2~3)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안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업무의 기획 및 총괄 업무 이관
- (기존) 경제건설국 산림편백과 → (변경) 기획실

부서	현행	조정	비고
경제건설국 산림편백과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업무의 기획 및 총괄 업무 이관	-	삭제
기획실	-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업무의 기획 및 총괄 업무 이관	추가

- 공동주택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이관

- (기존)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변경) 경제건설국 도시재생과

부서	현행	조정	비고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건축관련 인·허가	건축 관련 인·허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미만)	조정
경제건설국 도시재생과	-	건축 관련 인·허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함)	추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안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일부개정에 따라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확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안 제2조 구성)

- ▶ ①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 ①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안자 : 장성군수(환경위생과)

▪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련된 사항 중 부과기준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고 위반되어 조례 폐지 필요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법령의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주요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 안 자 : 장성군수(문화시설사업소)**

▪ **제안이유**

-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신축 및 공공체육시설 통합 관리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사용료 신설, 일부시설의 사용료 인하 및 조정
- 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공공체육시설 명칭과 위치(안 제3조)**

- 옐로우시티스타디움, 홍길동체육관, 실내수영장, 위라밸돔경기장, 게이트볼장 등

○ **시설 개방, 개방제한,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4조 ~ 안 제10조)**

- 군민누구나 차별없이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일과 사용시간을 공평하게 배정
- 시설 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위반행위 공개

○ **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사용료 신설
- 수영장 체력단련실 사용료 인하(홍길동체육관과 사용료 동일 2,000원⇒1,000원)
- 사용료의 관외거주자 차등적용(장성군민 사용료의 40% 이상 가산)

○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련 법령에 의한 예우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50% 감면)
- 장성군체육회 · 장성군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경기 ·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80% 감면)
- **사용료 반환기준 구체화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14조)**
 -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 등
-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6조 ~ 안 제19조)**
 -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면 소재 체육시설 면장에게 위임 관리
 - 위탁 및 임대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 안 자 : 장성군수(안전건설과)**
-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 도로점용료의 기준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액 도로점용료 기준 변경(안 제4조제3항)**
 - (현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개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안자 : 장성군수(경제교통과)
- 제안이유
 -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가맹점의 추가 환전한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추가환전 내용 개정(안 제15조 4항)
 - (현행) :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하여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환전할 수 있다.
 - (개정) :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하여는 환전 적정성·기간·한도 등을 장성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환전할 수 있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안자 : 장성군수(경제교통과)
- 제안이유
 - 2020. 5. 19.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제3항 신설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대상사업)에 따라
 - 우리군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대상사업(안 제3조)

- 운송원가 및 적자손실액 산정 방법(안 제4 ~ 5조)
- 재정지원 신청, 방법 및 결정, 조정·지원(안 제6조 ~ 8조)
- 재정지원 사용, 사후관리 등(안 제9조~1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안자 : 장성군수(산림편백과)**
- **제안이유**
 - 장성군 축령산을 방문한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능력이 있고 자연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나 숙박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금빛 휴양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근거**
 -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운영 등)
 - **위탁사유**
 - 금빛 휴양타운 운영사무는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24시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무임.
 - 전문인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숙박시설 운영 경력 5년 이상되는 자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
 - 조림왕 고 임종국선생이 일군 전국 최대 편백나무숲 축령산을 연계한 다양한 전문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휴양타운 이용객에 서비스 제공

○ 위탁범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항
 -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시설관리 및 운영(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 축령산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서비스제공 등)

○ 시설현황

- 시설명 :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 위 치 : 장성군 서삼면 모암길 153-83
- 주요시설 및 면적

시설명	동수	층별	면적(㎡)	용도	비고
숙박동	5동	지상1층	60	숙박시설	
부대시설	1동	지상1층	90	관리실 및 근린생활시설	
기 타			17,269	-	도로등
합 계			17,419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안자 : 이태신 의원, 김희식 의원

▪ 제안이유

-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민의 참여와 협력 및 소유자등의 의무(안 제4~5조)
- 동물의 등록 및 동물등록대행자 지정·관리(안 제6~7조)
-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감독(안 제8~9조)
- 반려·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안 제10조)
- 맹견 및 길고양이의 관리 등(안 제11~12조)
- 반려동물 사업 지원 등(안 제1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안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편성개요**
 - 금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각종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과 기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액에 따라
 - SOC생활기반 확충, 정주여건개선, 군정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가용자원을 활용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코로나 19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함.

- 세 입 : 476,256,387천원
- 가. 삭감(일반+특별) : 해당없음
- 나. 증액(일반+특별) : 해당없음
- 다. 회계별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476,256,387	-	-	-	476,256,387
일반회계	465,594,764	-	-	-	465,594,764
특별회계	10,661,623	-	-	-	10,661,623

-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 세 출 : 476,256,387천원
- 가. 삭감(일반+특별) : 해당없음
- 나. 증액(일반+특별) : 해당없음
- 다. 회계별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476,256,387				476,256,387
일반회계	465,594,764				465,594,764
특별회계	10,661,623				10,661,623

-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안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1년도 장성군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천원)

기 금 명	'20년도말 조성액①	'21년도 기금운용		'21년도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 감 ④-①
		수입 ②	지출 ③		
합 계	8,800,000	1,395,005	8,811,934	1,383,071	△7,416,9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800,000	1,395,005	8,811,934	1,383,071	△7,416,929

- 의결결과 : 원안가결